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2. 16(금) 10:00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89호

나. 제 출 자 : 정순기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2. 2.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2018년부터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 2022년부터는 “금천구 가족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의 정비(안 제1조)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금천구의 가족 및 다문화 정책이 통합·운영되었고, 2022년부터 “금천구 가족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1)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의 정비(안 제1조)

3)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2조제1항)

금천구 가족센터 연혁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06.12.11.) ■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2010.01.01.) ■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2018.01.01.) - 여성가족부는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안(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2013년 말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금천구는 2018년부터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운영기관을 운영 및 확대하였음. ■ 금천구가족센터 명칭 변경 (2022.01.01.) -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인해 특정 가족만 이용 가능한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음. -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부터 여성가족부에 의해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본 센터는 2022년부터 변경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 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 번역 지원사업 등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금천구가족센터의 통합 운영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 조례의 제도상 정비는 정책 변경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4.] [여성가족부령 제19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